

<b>보도</b>	<b>2026.4.30.(목) 조간</b>	<b>배포</b>	2026.4.29.(수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

<b>담당부서</b>	전자금융검사국 검사기획상시팀	<b>책임자</b>	팀 장 이승훈 (02-3145-7154)
		<b>담당자</b>	수 석 정재연 (02-3145-715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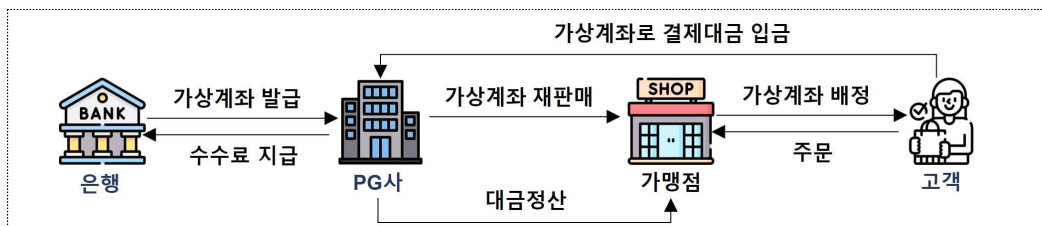
##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PG사에 대해 「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」을 도입합니다.

-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'26.7.1.부터 **기준 시행**

### I 추진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가상계좌의 불법도박·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음
  - 가상계좌 발급 금융회사(은행·저축은행·상호금융)에 대하여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\* 심사 및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,
    - \* PG사는 은행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재판매하고 자금정산을 대행
  -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법행위 의심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**통보\***하였음
    - \* '24년 이후 불법행위 연루 정황이 확인된 14개 PG사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완료

〈가상계좌 발급 및 재판매 거래구조〉



- 다만, **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어** 개별 PG사의 자발적·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움
- ⇒ 이에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「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\*」(행정지도)을 도입·시행하고자 함

\* '26.4.28. 행정지도심의위원회(금감원)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으며,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'26.7.1.부터 **시행** 예정

## [참고] 가상계좌 관련 그간 금융감독원 대응 경과

- **(은행·비은행)** PG사나 가맹점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·상호금융 등 수신기관에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('24.4월~)
  - 가상계좌 재판매사 심사 및 계약조건 강화, 2차 재판매사에 대한 사전심사 및 모니터링 도입 등 사전통제 체계 운영
  - 가상계좌 재판매사 자격 정기 재심사, 이용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 사후처리 강화, PG사의 가맹점 관리결과 점검 등 사후통제 강화
  - 상호금융 중앙회의 조합점검 등을 통해 불법의심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에 대한 가상계좌 이용정지 조치
- **(PG사)** 도박사이트 등 가맹점의 불법행위와 연루된 PG사 등에 대한 상시감시 및 점검을 강화('24.2월~)
  - PG사의 가상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불건전 거래패턴과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
  - 이상징후를 보인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도박 연루 혐의 등 불법 정황이 확인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
- **(AML)** 가상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(AML)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('25.4월~)
  - 은행에서 가상계좌 발급계약 체결시 PG사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관리,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지도
  - 가상계좌 관련 의심거래 유형을 발굴하고, 은행 및 비은행권에 대하여 유사한 거래유형을 점검 후 의심거래 보고(STR) 지도
  - 불법 의심 가상계좌 발급 단위조합에 대한 AML 검사 지원 및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 PG사 AML 현장점검 실시
- **(소비자)**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('26.4.20.)
  - 가상계좌를 이용한 주요 금융사기 수법과 피해사례 등을 전달하여 소비자 경각심 제고 및 대응 요령 안내

## II 업무처리기준의 주요 내용

- ◆ ①가상계좌 이용 가맹점 심사 및 사후관리, ②불법행위 의심거래 사전 차단, ③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 전반에 대해 규율
- ① **[가맹점 심사·관리]**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에 대하여 세부 심사항목과 절차를 마련하고,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사후 조치 필요
- ② **[불법 의심거래 차단]** 불법거래 이용 우려가 높은 고정식 가상계좌는 제한적으로 발급하고, 정산 방식은 일괄 정산 또는 지연 정산 원칙
- ③ **[자금세탁방지 의무]** 가맹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(CDD)을 철저히 이행하고,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의심거래 보고(STR) 필요

### 1 가맹점 심사 및 사후관리

- PG사는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에 대하여 실재성, 재무건전성, 목적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,
  - 가상계좌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용중단이나 계약해지를 검토하여야 함
  - 또한, 가맹점이 가상계좌를 2차 재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하위가맹점 심사 및 이용 모니터링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

### 2 불법행위 의심거래 사전 차단

- 가상계좌는 일회성 가상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고정식 가상계좌\*는 정기 수납 등 이용 목적 확인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발급 가능하고,
  - \* 일회성 가상계좌와 달리 고정식 가상계좌는 통제장치 없이 반복 입금이 가능하여 도박머니 충전, 불법자금 입금, 자금세탁 등의 용도로 자주 이용
  - 가상계좌 정산은 일괄 또는 지연정산을 적용하되, 실시간 정산이 불가피하고 내부통제가 양호한 가맹점에 한해 실시간 정산 허용
  - \* 불법도박 가맹점의 경우 영업시간외 새벽시간을 통해 실시간 정산이 이루어짐

### 3

## 자금세탁방지 의무

- PG사는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(CDD) 의무를 이행하고,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고객확인을 재이행하여야 하며,
  - 가맹점 등의 가상계좌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거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의심거래 보고(STR)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

## Ⅲ

##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

### 1

### 기대 효과

- 가맹점 심사 강화, 고정식 가상계좌 발급 제한 등 PG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가상계좌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,
  -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상계좌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불법 의심 가맹점의 이용중단 및 계약해지 등 사후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
- ⇒ PG사 가상계좌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,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

### 2

### 향후 계획

- 동 업무처리기준은 PG사의 시스템 구축, 세부 절차 마련 등 이행 준비기간을 거쳐 '26.7.1.부터 시행될 예정
-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내부 통제 개선 실태를 점검하고, 불법·불건전 영업행위 의심 PG사에 대해서는 테마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,
  -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PG사와 가상계좌 재판매 계약 체결시 PG사의 업무처리기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지도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## 1. 목적

이 표준업무처리 예시안은 수신기관 등과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가맹점에 가상계좌를 재판매(제공)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(이하 'PG사')의 의무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와 시장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

## 2. 정의

### 가. 가상계좌

이 지침에서 가상계좌라고 함은 은행 등 수신기관 계좌("모(母)계좌")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가상 전산코드로서 입금자의 편의를 위해 입금자별로 부여 및 제공하는 입금 전용 번호 성격의 계좌를 말함

### 나. 가상계좌 재판매

이 지침에서 가상계좌 재판매라고 함은 수신기관 또는 상위 PG사와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신기관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 또는 PG사의 하위가맹점에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, 전산 중계 수행업무는 포함되지 않음

### 다. 수신기관

이 지침에서 수신기관이라고 함은 가상계좌를 발급하고, 해당 가상계좌를 통한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모계좌의 개설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등을 말함

### 라. 가맹점

이 지침에서 가맹점이라고 함은 PG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PG사에 의하여 가상계좌 이용권한을 부여받는 자를 말함

### 마. 그 밖의 용어의 정의

이 가이드라인에서에서 정의한 것 외의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및 이 법들의 시행령, 시행규칙 등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름

### 3. 취급제한 대상

가.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계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

- ① 다단계판매, 유사수신, 도박, 불법사이트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예상되는 경우
- ② 가상계좌를 오용 또는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가맹점의 신인도가 의심되는 경우
- ④ 기타 계좌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
- ⑤ 합법적인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아닌 선불 충전, 적법하지 않은 상품권의 유통, 아이템 판매, 유사투자자문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구제신청이 빈번한 경우
- ⑥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되어 타 PG사 등과 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

나. 가.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신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음

### 4. 가맹점 심사 및 사후관리

- ① PG사는 가상계좌가 불건전하게 이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맹점에 대하여 아래 심사 항목 중 최소 5개 부문, 16개 세부 항목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,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중 심사자료를 보관하여야 함
- ② (2차 재판매) 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점이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하위가맹점에 재판매하려는 경우, 가맹점의 동 지침에 따른 하위가맹점 심사 여부를 확인하고, 가맹점이 하위가맹점의 가상계좌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고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
- ③ 신용카드 등 타 지급결제수단의 거래없이 가상계좌만 이용하여 거래하려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세부 심사항목을 모두 심사하고, 심사 결과와 함께 경영진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- ④ 상세 심사안 및 통과 기준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, 계약 이후에도 매분기 가상계좌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사고·민원 증가 등 이상징후 가맹점에 대해서는 개선 이행을 요청하거나 발급 계좌 수 축소, 지연정산 적용 등 이용을 제한하고, 소명이 미흡하거나 거래목적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용중단이나 계약해지를 검토하여야 함
- ⑤ (2차 재판매) 가맹점의 하위가맹점에 대한 가상계좌 이용 모니터링 결과를 매분기 점검하고, 거래목적이 의심되는 하위가맹점에 대해서 추가 점검 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함

- ⑥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,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, 협의된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, 민원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법규 위반 및 소비자 피해 확산 등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하며,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함

<b>※ 가상계좌서비스 이용 계약서상 계약해지·이용중지 조항(예시)</b> (법규위반, 계약 미이행 등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 이외 항목)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규위반 및 소비자 피해확산 등이 우려되는 경우 PG사는 즉시 서비스를 중지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.
①	감독기관 또는 수신기관으로부터 지시·권고가 있는 경우
②	사고신고, 제보, 수사 요청, 민원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
③	계약서에 명시된 발급 용도 외 이용 등 본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
④	감독당국에서 금지하거나 유의업종으로 분류한 업체를 이용기관으로 유치한 경우
⑤	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PG사가 판단하는 경우

**가상계좌 재판매 서비스 이용업체 심사·관리 항목**

항목	세부 심사항목	심사안
1. 신인도	① 업체 연혁	· 설립 이후 매출 발생 최소 1년 이상 경과 · 업종 특성이나 모회사 등으로 실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매출 발생 6개월 이상 경과
	② 기존고객 여부	· PG社와 기존 거래 여부 확인
	③ 업체·주주·경영진 평판	· 자료 요청, 언론보도 검색, 풍문 조회 등을 통해 부정적 평판 점검
2. 실재성	① 휴폐업 조회	· 사업자 휴폐업 조회
	② 계좌 유효성	· 정산대금 계좌가 사업자 계좌인지 확인
	③ 사업자 등록	·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
	④ 물적 시설·인력	· 실재성 확인이 가능한 조사방법을 통해 시설·인력 적정성 점검
	⑤ 사업내용	· 사업계획서상 사업내용과 실제 제공하는 재화·용역의 일치 여부
3. 재무 건전성	① 재무상태	· 자산·자본 규모, 3년 연속적자 등 점검
	② 신용등급	· 외부 또는 은행 내부 신용등급 심사
	③ 감사의견	· 의견거절·부적정 여부 확인
4. 하위물 관리	① 하위물 여부	· 하위물 존재 판매대행사인지 여부 확인
	② PG업 등록여부	· PG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확인
	③ 하위물 관리 가능 여부	· 사전 하위물 등록 및 결제시점에 하위물의 매출액 관리 가능여부
5. 목적 적합성	① 신청 목적 확인	· 사용 목적이 자금수납 이외 용도인지 점검
	② 제한업종 영위 여부	· 제한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검증
	③ 신청 계좌수 적정성	· 고객수, 월평균 예상 이용건수를 발급신청 계좌수와 비교
	④ 입금 한도 적정성	· 건당 입금한도를 업종, 매출액 등 예상 거래금액과 비교
6. 소비자 보호	① 인력 및 매뉴얼	· 소비자 대응 인력·매뉴얼 적정성 확인, 민원·사고 등 처리결과 점검
	② 손해배상 능력	· 책임보험, 지급준비금, 제공담보 등 확인

## 5. 가상계좌 발급 제한

- ① 가맹점의 업종, 사용 목적 및 예상 거래금액 분석 등을 바탕으로 가맹점별 가상계좌 입금 한도와 발급횟수를 제한하여야 함
- ② 결제대금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는 원칙적으로 일회성 또는 회전식 가상계좌 형태로 가맹점에 발급하여야 하며, 고정식 가상계좌는 증빙서류를 통해 정기수금 필요성 등 발급 목적이나 용도가 확인되는 가맹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계약기간 중 증빙서류는 보관하여야 함
- ③ 선불 계정 충전 목적의 가상계좌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선불 계정 소유자의 본인인증을 통해 일회성 가상계좌를 발급하거나, 고정식 가상계좌로 운영시 입·출금 횟수 제한, 타 가상계좌로 송금 제한, 입금자명 확인, 출금 제한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회사가 합리적인 사전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함

## 6. 해외 소재 가맹점 심사 및 사후관리

- ① 가상계좌를 이용하려는 가맹점 또는 하위가맹점이 국내에 소재지가 없는 가맹점인 경우에도 동 지침에서 정하는 가맹점 심사 및 사후관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
- ② 가맹점이 해외 소재 하위가맹점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려는 경우 가맹점의 하위가맹점에 대한 심사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고, 가맹점의 하위가맹점에 대한 가상계좌 이용 모니터링 등 관리 의무를 계약상 조건으로 운영하여야 함
- ③ 가맹점이 하위가맹점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점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, 불이행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야 함
- ④ 가맹점 또는 하위가맹점 소재지의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규 수준이 다른 경우에는 소재국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

## 7. 가상계좌 발급·정산 시스템 운영

- ① 가상계좌 발급 및 정산업무 시스템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접근권한이 부여되도록 적절한 통제장치\*를 마련하여야 함

\* 발급시 쇼핑물 IP, 정산시 OTP(인증세션) 등을 통한 가맹점 부인방지 기능 강화 등

- ② 가상계좌 입금액 집금·정산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는 일괄 정산 또는 일정시간 경과 후 처리하는 지연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며, 거래 특성상 실시간 정산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, 내부통제가 양호한 (하위)가맹점에 한해 내부 검토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간 정산을 허용하되, 관련 검토문서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
  - \* 영업시간이 아닌 새벽시간대 실시간 정산 허용시 가맹점 매출 정보의 상세한 확인 및 검증 필요
- ③ 가상계좌가 가맹점과 계약된 접속 주소(웹페이지, 앱 등)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부여되지 않도록 전산적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, 가맹점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가상계좌가 더 이상 부여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함
- ④ 가상계좌 출금시 환불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여 승인 거래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, 자금 이체는 가상계좌 결제 취소에 따른 환불금 지급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고,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의 이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자금을 가맹점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송금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- ⑤ 판매대금 정산의 경우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하위판매자의 정산주기 등을 확인 하여 비정상적인 정산 흐름을 방지하도록 하며, 매출정보 등 정산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출금이 실행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

## 8. 자금세탁방지 의무

- ① PG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특금법’)에 명시된 고객확인(CDD), 강화된 고객확인(EDD),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(STR)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
- ②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점에 대하여 필수 신원정보를 확인 하고,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 고객확인(CDD)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
- ③ 가맹점 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는 특금법규상 일회성 금융거래(특금법 시행령 §10의2②)에 해당되므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여야 함
- ④ 고객확인 의무 대상인 가맹점 등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거래자금의 원천 및 거래의 목적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(EDD)을 실시하여야 함

- ⑤ PG사는 가맹점과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하며, 고객확인을 이행한 후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도를 고려한 주기에 따라 고객확인을 재이행하여야 함
- ⑥ 가상계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및 하위가맹점의 가상계좌 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·운영하고,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
- ⑦ 가맹점 및 하위가맹점의 가상계좌 거래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,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(STR)를 수행하여야 함
- ⑧ 가상계좌를 이용한 불법거래 유형\*을 참고하여 관련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

- \* ① 신용카드 거래 없이 가상계좌만 이용하여 거래
- ② 상품금액과 상이한 소액단위(5~50만원) 결제의 반복적 발생
- ③ 가상계좌 거래에서 입금액을 초과하는 출금 사례 다수 발생
- ④ 새벽시간대 정산 다수 발생